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제38조제1항 관련)

구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하 “외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이하 “내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
자격 기준	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안전관리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선박안전관리사 2급의 자격 취득 후에 12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안전관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선박안전관리사 3급의 자격 취득 후에 6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사람
	안전관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안전관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선박안전관리사 3급의 자격 취득 후에 6년 이상 선박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선박안전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인원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안전관리자	1. 4척 이하: 2척당 1명 이상 2. 5척 이상: 3척당 1명 이상	1. 8척 이하: 4척당 1명 이상 2. 9척 이상 15척 이하: 5척당 1명 이상 3. 16척 이상: 6척당 1명 이상

비고

1.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2. 하나의 사업장에 외항선과 내항선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안전관리책임자: 외항선의 기준을 적용한다.
 - 나. 안전관리자: 내항선 및 외항선의 자격기준 및 인원을 각각 적용한다.
3. 사업장 소속 선박이 1척(내항선은 2척 이하)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위 표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